

사회봉사활동 학점 취득 규정

□ 제정 : 2006. 03.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 사회봉사활동(이하 “사회봉사”라 한다)의 학점 취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및 절차)

1. 본교에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으로 한다. 단, 해당 사회봉사기관에 재직중인자는 제외한다.
2. 사회봉사활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단과대학에 사회봉사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3. 소속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신청서를 단과대학장에 제출한다.

제3조(학점인정 및 성적표기)

1.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학기(계절학기 포함) 학점으로 인정한다.
2. 수강신청은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걸쳐 본인이 수강신청한다.
3. 사회봉사 학점의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은 2학점까지만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4. 사회봉사 학점인정 기준시간은 48시간 이상을 2학점으로 인정하며 기본교육 2시간, 자원봉사활동 46시간이상으로 구성된다.
5. 수강신청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6. 봉사활동의 경우 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제4조(사회봉사 활동의 범주)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봉사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고 교내외에서 자원봉사하는 제반활동을 말하며, 그 범주는 아래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단체 등에서 대 국민 민원봉사를 위해 시행하는 행정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경우
 2. 각종 법인 또는 법인 자격에 준 하는 사회단체가 비영리, 공공편의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경우
 3.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등 범 국가적인 체육경기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경우
 4. 유엔(UN)또는 그 산하기구, 기관에서 지구 환경과 세계 시민의 안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경우
 5. 양로원, 고아원, 갱생원 등 사회복지단체에서 무보수 자원봉성한 경우
 6. 국내외 각종학교(고등학교 급 이하)에서 학생들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자원 봉사자로 참여한 경우 (교직이수대상자의 교육실습 제외)
 7. 본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자원 봉사자로 학교가 특별히 선발하여 활동한 경우
 8. 자신과 인척관계가 전혀없고, 스스로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자를 위해 봉성한 경우
 9. 전공과목의 강의 계획에 따라 공공의 이익이 되는 현장활동을 한 경우
-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회봉사활동으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활동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을 경우

2. 활동의 내용이나 그 결과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자신을 포함한 개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자신의 직접적인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봉사하지 않고 타인이 대신한 경우

제5조(보칙)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등 관련 규정과 사회봉사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